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 등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00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	3
2.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 기한 단축	8
3.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의제 ...	10
4. 지방자치단체의 농촌협약에 대한 책임성 강화	13
5. 그 밖에 사항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9. 16.
3. 회 부 일 : 2025. 9. 17.

II. 제안이유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등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 등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시장·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현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협약이 시·군 등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촌협약의 성과관리 및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시장·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외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을 통해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 등이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하여 농촌협약 이행에 대한 시장·군수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등이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함(안 제2조, 제11조의2).

나. 시장·군수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 및 보고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8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 등이 체결한 농촌협약의 유지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

IV. 검토의견

1.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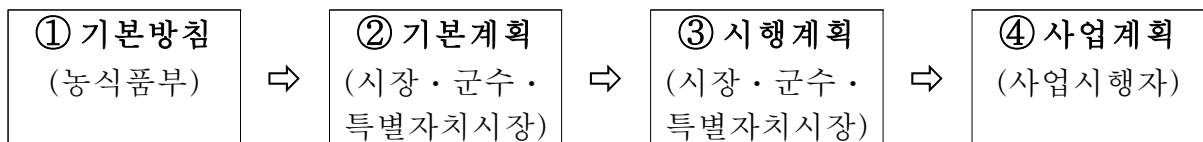
개정안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의2 및 제11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8. ~ 1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생략) <u>7의2. “농촌특화지구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u> 8. ~ 17. (생략) <u>제11조의2(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 <u>② 농촌특화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u> <u>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u> <u>3.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등 농촌공간의 정비에 관한 사항</u> <u>4.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u> <u>③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의견청</u>

현 행	개 정 안
	취, 승인 및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중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보고, 제11조 중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본다.

현행법은 농촌공간계획 체계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② 기본방침에 따라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는 10년 단위 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는 5년 단위 시행계획, ④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하는 네 단계의 체계로 규정하고 있음.

[농촌공간계획 체계도]



그러나, 현행 시행계획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¹⁾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시·군·특별자치시 전역을 포괄하는 농촌특화지구 설계가 어렵고, 시행계획에는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어 수립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1)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농촌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시·군·특별자치시별 3개 내외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할 예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식품부)

이를 통하여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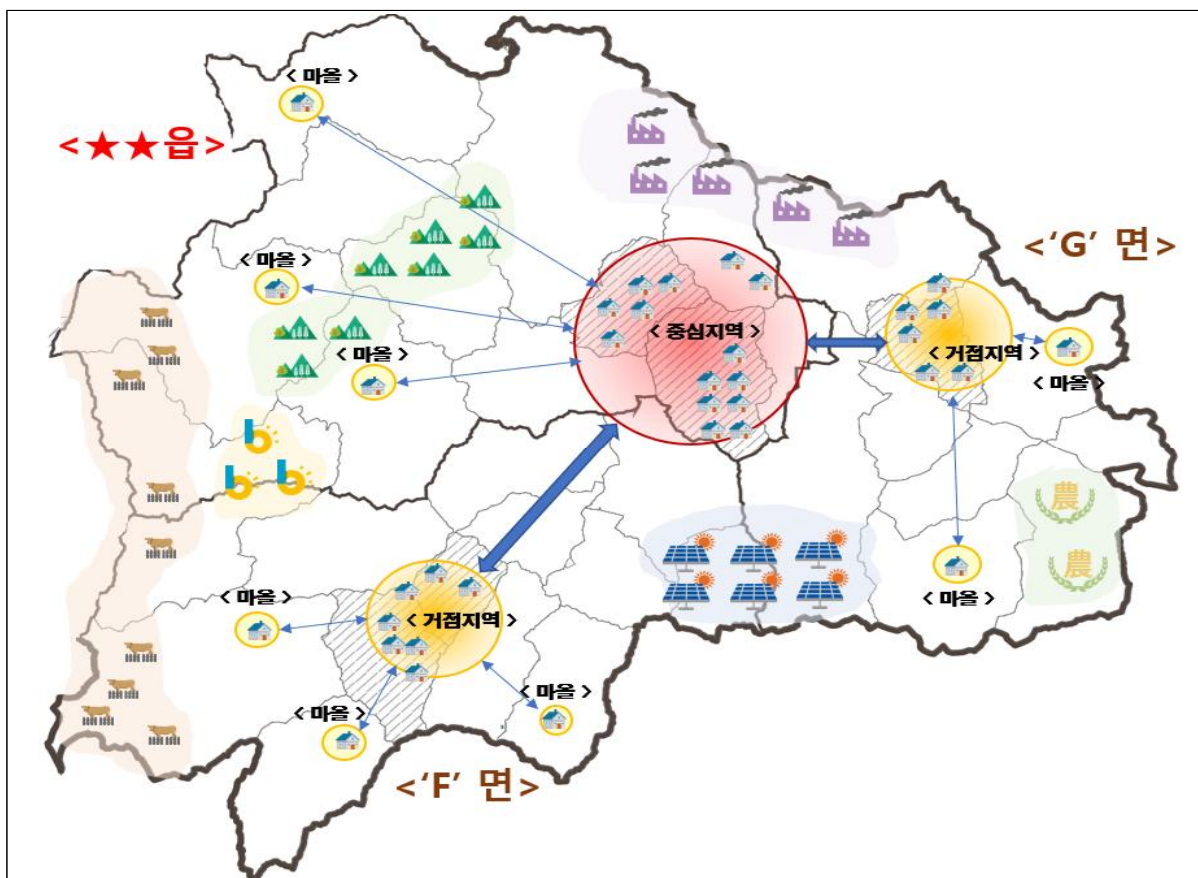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농촌특화지구계획에 의하여 농촌특화지구에 관련한 사업만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²⁾, 기본계획에 담긴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지 못하고 특정 농촌특화지구에 대한 사업만 분절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보임.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농촌의 난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봄.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후 공간형성(예시)]



※자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1.)

2) 후술할 안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여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가능함.

둘째, 개정안에 따라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선택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계획내용이 간소하고 지역 범위에 제한없는 특화지구계획 제도만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농촌특화지구계획은 시행계획에 비하여 추가되는 사항이나 의무가 없으며, 내용을 간소화하고 지역적 범위에 제한도 없으므로 계획수립권자 입장에서는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행정적인 편의가 보다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유인이 적어지게 된다는 측면이 있음.

또한,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이 중첩적으로 수립되도록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 간 수립 시점에 따라 내용이 충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의 혼동, 복잡해진 사업구조로 인한 사업추진 및 행정에 복잡성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농촌특화지구계획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으나,³⁾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사업추진 방식’, ‘투자계획’, ‘기대

3) 후술할 안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여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효과'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특화지구계획에서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종합하면,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여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농촌공간에 대한 정비사업의 적시성을 제고할 할 필요성과,

농촌특화지구에 대해서만 분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지역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정비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 간소화된 절차로 인하여 기존 절차(시행계획)의 실효성 및 활용도가 적어질 수 있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특화지구계획의 도입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2.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 기한 단축

개정안은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 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생 략) 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u>기본 계획이나</u>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u>시행계획</u> 을 통지한 날부터 <u>60일 이내</u> 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u>60일이</u>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생 략) ② ----- <u>기본계획</u> , ----- ----- <u>시행계획 또는 제11조의2의 농촌특화지구계획</u> ----- <u>30일 이내</u> ----- <u>30일이</u> -----.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획수립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되, 해당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견제시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계획수립권자가 보다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해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한을 단축할 필요성과 함께, 지방의회가 계획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할 필요성, 유사 계획수립 제도의 의견청취 기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광역도시계획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기한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 입법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의제

개정안은 농촌특화지구가 지정된 경우,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확정하는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u>⑤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가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확정하는 때에 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u>
<u><신 설></u>	

현행법 제31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 「농지법」상 농지전용 등4)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① 시행계획 승인단계,5) ② 사업계획 승인단계6)에서 각각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두 번의 협의 절차에 따라 계획 수립기간이 지연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행계획 승인단계에서만 농지전용 협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수립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31조제4항은 농촌특화지구 지정시,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때에 농지전용 허가를 의제하고 있는데, 농촌특화지구와 사업시행자 지정은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이 승인된 후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그 기간의 차이가 적다는 점에서 이를 각각 구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이하 생략)

5) 「농지법」 제43조의2에 따라 지구 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분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의제할 입법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19조는 개정안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체계 하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 허가를 의제하고, 제안자가 아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농지전용 허가를 의제하려는 취지로 확인됨.

「도시개발법」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⑤ <u>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⑥ <u>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제안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u>

*현행 「도시개발법」 제19조제6항 본문에는 “제4항에 따른 제안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4항은 제안자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법률 문맥상 “제5항에 따른 제안자”가 올바른 인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함.

4. 지방자치단체의 농촌협약에 대한 책임성 강화

개정안은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농촌협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①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이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①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 및 농촌협약 대상 사업의 이행 현황
	2. 농촌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3. 목표 달성도 및 성과
	②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협약 종료 시점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농촌협약 전체 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 ② (생 략)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법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농촌협약 신청 서류에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의 유지가 어려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농촌협약은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생활권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투자함으로써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임.

그러나,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군수 등은 매년 3월까지 농촌협약 이행실적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농촌협약 이행실적 사업 진행률 위주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 평가와 환류가 어려웠음.

또한, 농촌협약은 당사자 간의 상호 동의에 따라 해약하도록 규정⁷⁾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협약 체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와 같이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협약을 해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협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농촌협약의 해지 요건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 제19조제3항제1호는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여 ‘성실한 이행’이라는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기술하고 있고, 제3호는 “그 밖에 협약의 유지가 어려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정하여 해약요건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농촌협약의 일방적인 해지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상당한 손해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자의적으로 해석 또는 적용할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② 농촌협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수 없도록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부터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개정 사항으로는, ①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에 따라 현행 법의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관련 규정에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② 농촌협약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③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확정(승인)을 위한 협의 대상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첫째, 안 제6조 등 11개 조항은 안 제11조의2(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여 농촌특화지구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이 법 전반의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관련 규정에 농촌특화지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는 개정사항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규정	현행	개정안
안 제2조(정의) 제4호 및 제6호	시행계획 관련 규정	농촌특화지 구계획 추가
안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	〃
안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
안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	〃
안 제15조(주민제안)	〃	〃
안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	〃
안 제33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	〃
안 제34조(지원조직)	〃	〃
안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	〃
안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
안 제41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	〃

둘째, 안 제2조(제11호), 제11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5개 조항은 농촌협약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임.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를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봄.

규정	현행	개정안
안 제2조(정의) 제1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
안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	시장·군수와 특별자치시장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
안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
안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	”
안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	”

셋째, 안 제11조제2항은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승인(확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협의대상을 추가하려는 내용임.

현행법 제11조제2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관계 부처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⁸⁾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및 농지 등의 정책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25.10.1. 타법 개정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26. 1. 2. 시행)

※ (그 밖에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란 농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u>시행계획</u> 으로 구분한다.	4. ----- ----- ----- ----- ----- ----- ----- ----- ----- <u>시행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u>시행계획</u>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6. ----- ----- ----- ----- ----- ----- ----- ----- ----- <u>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신설>	7의2. (생략)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1. ----- ----- ----- <u>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u> -----.
12. ~ 17. (생략)	12. ~ 17. (현행과 같음)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② (생략)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생략)

④ ~ ⑥ (생략)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생략)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
-----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

10.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
-- 기본계획, -----
----- 시행계획 또는 제11조의
2의 농촌특화지구계획 -----

-----.
-----.

② ----- 기본계획,

- 시행계획 또는 제11조의2의 농촌특화
지구계획 ----- 30일 이내 -----
-- 30일이 -----
-----.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

-----.

③·④ (생 략)

⑤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5조(주민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 수립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② (생 략)

③ 농촌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①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시장 또는 군수는 -----
-----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

⑥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5항후단과 같이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
-----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주민제안) ① -----
-----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촌협약의 신청 기간, 처리 기간,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촌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3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생략)

② 광역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3. (생략)

③ 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 4. (생략)

④ (생략)

제34조(지원조직)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

-----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①· ② (생략)

③ -----
-----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
-----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① -----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 -----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계획

2. 3. (현행과 같음)

③ -----
-----.

1.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계획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지원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생 략) 2.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u> 등의 평가 3. ~ 8. (생 략) ③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 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 직을 둘 수 있다. 1. (생 략) 2.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관리</u> 3. ~ 9. (생 략) ④ (생 략)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② (생 략)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 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u>에 대한 수립 지 원 4. ~ 8. (생 략) ④ ~ ⑥ (생 략)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u>기 본계획과 시행계획</u>의 수립 및 운영 실태 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 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기본계획 또는</u>	1. (현행과 같음) 2. <u>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계획</u> ----- 3. ~ 8.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u>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계획의 총괄·조정·관리</u> 3. ~ 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 -----. 1.·2. (현행과 같음) 3. <u>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 계획</u>----- 4. ~ 8.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 ----- ----- <u>기본 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u>-- ----- ----- -----. ② ----- <u>기본계획, 시행</u>
---	---

<u>시행계획</u>이 기본방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u>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u>을 조정하여야 한다.	<u>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u>----- ----- ----- ----- ----- <u>기본계획,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u>----- -----.
제41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u>기본계획과 시행계획</u>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41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 <u>기본계획,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u>----- ----- -----. ② ~ ⑦ (현행과 같음)